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발의】



2017. 12.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23호로 2017년 11월 13일 유승용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나.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자 업무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제8조)

마. 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관리방안(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7. 11. 8. ~ 11. 13.)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변 및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 수거함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총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리자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헌옷 재활용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등과 의류수거함 설치로 인한 차량의 통행 및 구민불편 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불법 의류수거함 등에 대한 강제철거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관리 등이 소홀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¹⁾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2016.7.25.)

-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권고

※ 최근 3년간(2013.1~2015.12) 국민신문고에 총 1,552건의 고충민원이 제기됨

관 련 법 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8.3.21.]